

세종자이 e편한세상 특별공급 안내문

대전시청

공급개요

- 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4블록
- 규모 : 지하 2층 ~ 지상 25층 / 18개동 / 총 1,200세대
- 입주 : 2021년 10월(예정)
- 대상 : 당첨예정자 1명, 예비대상자 1명 / 총 2명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특별공급 대상세대수 - 장애인 (대전시)

구분		공급 세대수	해당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주택형	타입		① 당첨예정자		② 예비대상자	총 대상자 (①+②)
			당해	기타		
84.0000A	84A1	313	-	-	-	-
	84A2					
84.6900B	84B	73	-	-	-	-
84.0000C	84C	188	-	1	1	2
	84E					
84.0000D	84D1	146	-	-	-	-
	84D2					
계		720	-	1	1	2

- ※ 청약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주택형을 통합하였습니다.
- ※ 주택형은 선택이 가능하나 세부 타입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무작위 추첨)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 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특별공급 접수일정

구분	신청 접수일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19.05.23(목) 예정	• 세종자이 e편한세상 홈페이지 (http://sejong-xi-daelim.com)
건본주택 개관	2019.05.24(금) 예정	• 건본주택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특별공급 청약접수	2019.05.29(수) 예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www.ap2you.com), • 건본주택 방문 접수 (65세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만 가능)
당첨자 발표	2019.06.10(월) 예정	• 당사 홈페이지 게재 (www.xi.co.kr),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www.ap2you.com)

-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접수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니 신청자격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 등)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급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재당첨 제한기간	과밀억제권역	그 외 지역
	전용 85㎡ 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 85㎡ 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	당첨일로부터 1년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www.api2you.com) 또는 KB국민은행 (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 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을 의미합니다.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에게만 공급 ※ 단, 거주요건 등의 우선기준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입주자저축 불필요]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www.ap2you.com)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및 제45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해당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비고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모든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하오니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및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동일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청유형(기관추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에 관계없이 1세대 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과 1순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복하여 청약할 경우 특별공급 당첨이 인정되고 1순위는 당첨여부에 따라 무효 또는 부적격(재당첨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별 청약신청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2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세종시는 투기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이며 당첨자(계약자)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별표3]에 의거 해당 특별공급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 (당첨자발표일)부터 5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승인 이후 견본주택, 인쇄제작물, 당사 홈페이지(sejong-xi-dael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자이 e편한세상” 견본주택(☎044-415-18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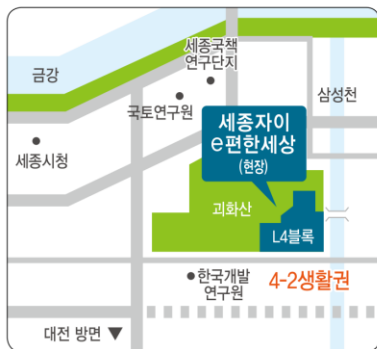
해당 특별공급 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대상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인터넷청약자	인터넷취약자 (건본주택접수)
자격 요건확인 및 본인 검증서류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 (www.ap2you.com)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인터넷 청약시 자동확인 (제출생략)	청약 신청시 필수서류 청약마감시간 이후 제출불가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함.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청약시 입력기준 ※ 당첨이후 필수제출사항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당첨이후 필수제출사항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업주체 및 관련기관 자격확인 등 추가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해당자만 제출	해당자만 제출 [당해지역 신청시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 제4조 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 신청시 필수서류 청약마감시간 이후 제출불가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신청서류 완비 및 접수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현장주소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L4블록)

세종자이 e편한세상

5月 OPEN(예정)

044) 415-1811

총 1,200세대

전용 84㎡, 101㎡, 124㎡, 124/129/144/160㎡P, 153㎡T

시행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에스건설(주), 대림산업(주)
시공사 : 지에스건설(주), 대림산업(주)

Location & Premium

초록빛 자연을 품은 1,200세대 대단지!
 브랜드 자부심에 에코 프리미엄을 더했습니다



※ 상기 현황 및 개발계획은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당사와는 무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종시 4-2생활권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디자인 홈페이지(www.happycity2030.or.kr) • 외곽순환도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naacc.go.kr)



PREMIUM 01

명품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

소비자와 언론에서 인정받은 브랜드 3관왕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브랜드스타)의 자이와 건설명가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이 함께하여 더욱 높아진 브랜드 프리미엄



PREMIUM 02

살수록 쾌적한
 에코 프리미엄

괴화산과 삼성천에 둘러싸인 배산임수의 자연명당 조망권을 고려하고 바람길을 확보한 쾌적한 단지



PREMIUM 03

빛나는 미래의
 에듀 프리미엄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계획)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단지과 인접해 있는 국책연구단지, 국내외 공동캠퍼스(계획)



PREMIUM 04

빠르고 편리한
 생활 프리미엄

대전, 청주, 공주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입지 BRT(간선급행버스) 및 상업시설 이용 용이